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8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관세청 제출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 (정부안, 최은석 의원안)	3

I. 개요

1.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07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4. 10. 18.
- (3) 회 부 일 : 2024. 10. 21.

나.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어,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안성 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입수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과세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64조의2제7호 신설).

나.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함(안 제264조의3제1항제7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 (최은석의원안, 정부안)

현 행	정 부 안	최은석의원안
☐ 과세자료* 제출기관 (§264의2)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관계 자료 ☐ 중앙관서·지자체·공공기관, 신용카드업자, 금융회사 등 ☐ <추 가>	☐ 제출기관 추가 ☐ (현행과 같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기관 추가 ☐ (현행과 같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자료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허가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등 * 관세법 시행령상 할당관세 추천서(농림부) 등 총 69개 자료 ☐ <추 가>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 1. 1.	☐ 제출자료 추가 ☐ (현행과 같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전신송금 정보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최은석의원안 2024. 10. 18 제출 (의안번호 4782),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2건의 개정안은 은닉이 쉬운 가상자산을 활용한 관세 체납처분 관리 강화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최은석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하는 과세자료에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과세자료 제출기관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중앙관서, 지자체, 공공기관, 신용카드업자, 금융회사등을 규정하고 있음.¹⁾

그러나 가상자산은 은행, 카드사 대비 수수료가 낮은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송시간이 짧아 무역대금 결제 수단으로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상 과세자료로 가상자산 결제내역은 입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특히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가상자산이 온전히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경우 무역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세수확보, 가격조작을 통한 관

1) 「관세법」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세탈루 단속, 채납자의 가상자산 은닉재산 추적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

'20년		'21년		'22년		'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208	11	8,268	15	56,717	21	14,568

(단위:건, 억원)

□ 이에 2건의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채납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관세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형태의 자산인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채납처분의 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소액물품 결제에 주로 이용되는 신용카드 내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등에 대해 관세채납자의 금융거래 자료 제출의무²⁾를 부여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편의성이 높은 새로운 결제 수단인 가상자산 관련 채납자의 거래내역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유사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다만 정부 개정안은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중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

2) 「관세법 시행령」 [별표 3]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52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채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하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과세자료 제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정부 개정안(의안번호 2203518, 의안번호2203526)은 이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그 범주를 확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모두 신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가상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의무 대상여부가 불분명하여 체납자의 가상자산 거래기록 중 누락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 역시 체납자의 가상자산 은닉재산 등을 추적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따라서 상기 개정안 및 최은석의원안과 같은 형식으로 「관세법」상의 가상자료제출기관의 범주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정부안 해당 규정의 조건을 삭제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9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종료 이후) 15년간 가상자산거래 기록을 보존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부가하지는 않는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제출해야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수입하

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등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³⁾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할당관세 추천서 등에 대한 자료 등 총 69개의 과세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최은석의원안은 제출 과세자료의 범위에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 및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전신송금 정보(이하 “가상자산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동 정보가 관세청에 공유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채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가상자산의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현재 ‘트래블룰’⁴⁾을 통해, 국내 신고된 사업자간 이전에 대해서만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있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외부 이전은 자율적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

3) 「관세법」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보험급여·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중 제27조, 제38조, 제241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제96조에 따른 감면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226조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허가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여 준 경우 그에 관한 자료
4. 이 법에 따라 채납된 관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5. 제264조의2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6. 거주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에 한정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 상당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현행법상 국내 신고된 사업자 간 이전에 대해서만 트래블룰이 적용되며, 해외사업자 또는 개인지갑등에 대한 외부 이전은 송수신인이 동일하고 본인 인증등을 거쳐 지갑 주소등을 사전 등록한 경우에 한해 가능함.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과세제출 대상에 가상자산 전신송금 정보를 파악 할 경우 과세당국이 취합하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의 범주가 확대되어 엄밀한 세원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조세채권의 일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신송금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지나친 개인정보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고려할 때, 불법 무역대금 결제여부를 불문하고,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일방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로 비추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특히 관세법상 과세자료는 개인정보 침해등을 엄격하게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고,⁵⁾ 가상자산을 통한 무역거래 대금의 결제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⁶⁾ 무역대금 관련 가상자산의 결제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신송금 정보를 제출 과세자료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보일 가능성이 있음.

둘째, 현행 제도를 활용해서 수사목적으로 가상자산거래 내역의 확

5) 「관세법」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6) 무역거래 지급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무역거래에 모두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무역거래 3.4%p 불과(2024.10.8.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보가 가능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⁷⁾는 관세범칙사건 조사, 탈루혐의 확인 등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통한 무역 대금결제 위법성이 추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특정 거래에 한정한 자산거래내역 확보가 가능하여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일부 실현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문 의 처

02)6788-5158

7)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8) 다만, 개정안은 선제적으로 모든 가상자산 전신송금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무역 대금 결제 관련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수사 단계에 이르러 관련 정보를 확보 가능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